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성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8250

발의연월일: 2022. 11. 15.

발 의 자:김성원·박대수·김용판

이양수 · 태영호 · 최영희

이종배 · 김희곤 · 이주환

노용호 의원(10인)

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중소기업 영업이익률이 감소하고 일부 위기가 심각한 기업은 조업 중단이나 폐업도 고려하는 상황임.

또한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원재료 가격은 평균 47.6% 상승한 반면, 납품대금은 10.2% 상승에 그쳐 수탁기업의 영업이익률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수탁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처해 있음.

이에 위탁기업이 물품 등의 제조를 위탁할 때 작성하는 약정서에 원재료 가격의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수·위탁기업 간 자율적인 납품대금 연동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, 원 재료 가격 변동 등 외부환경 변화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려는 것임(안 제21조제2항, 제22조제7항 및 제43조제3항제3호 신설 등).

#### 법률 제 호

#### 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대·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1조제1항 중 "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"을 "다음 각 호의"로 하고,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. 위탁의 내용
- 2. 납품대금의 금액, 대금의 지급 방법 및 지급기일
- 3. 납품대금 조정요건 및 조정주기
- 4. 남품대금 조정일 및 조정대금 반영시기
- 5.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
- 6. 제5호의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방법
- 7. 검사 방법
- 8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-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지 아니 한 약정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- 1. 위탁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인 경우
- 2. 물품등의 납품대금에 대하여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

제22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⑦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주요 원재료 가격이 수탁 기업과 위탁기업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라 납 품대금을 조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.

제43조제3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 조정방법에 따른 납품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

#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 위탁기	제21조(약정서의 발급) ①
업이 수탁기업에 물품등의 제	
조를 위탁할 때에는 지체 없이	
그 위탁의 내용, 납품대금의 금	<u>다음 각 호의</u>
액, 대금의 지급 방법, 지급기	
일, 검사 방법, 그 밖에 필요한	
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그 수탁	
기업에 발급하여야 한다.	
<u>&lt;신 설&gt;</u>	<u>1. 위탁의 내용</u>
<u>&lt;신 설&gt;</u>	2. 납품대금의 금액, 대금의 지
	급 방법 및 지급기일
<u> &lt;신 설&gt;</u>	3. 납품대금 조정요건 및 조정
	<u>주기</u>
<u> &lt;신 설&gt;</u>	4. 남품대금 조정일 및 조정대
	금 반영시기
<u>&lt;신 설&gt;</u>	5. 주요 원재료 종류 및 가격
<u> &lt;신 설&gt;</u>	6. 제5호의 주요 원재료 가격
	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
	<u>정방법</u>
<u> </u>	<u>7. 검사 방법</u> 오 그 방에 되어져 시청
<u> </u>	8.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
<u> </u>	
	<u>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u> 경으 이타기어의 스타기어에
	<u>경우 위탁기업은 수탁기업에</u>

 ② (생 략)

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

 ~ ⑥ (생 략)

 <신 설>

- 제43조(과태료) ① · ② (생략)
  -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

- <u>제1항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</u> 함되지 아니한 약정서를 발급 <u>할 수 있다.</u>
- 1. 위탁기업이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小企業)인 경우
- 2. 물품등의 납품대금에 대하여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주요원재료 가격 변동에 연동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
- ③ (현행 제2항과 같음)
-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 제22조(납품대금의 지급 등) ① ~ ⑥ (생 략) ~ ⑥ (현행과 같음)
  - ① 제21조제1항에 따른 약정서에 기재된 주요 원재료 가격이수탁기업과 위탁기업 양 당사자 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하는 경우 위탁기업은약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조정방법에 따라 납품대금을조정하여지급하여야한다.
  - 제43조(과태료) ① · ② (현행과 같음)

3	 	 	 	 	

-----

1. • 2. (생 략)	1.・2. (현행과 같음)
<u>&lt;신 설&gt;</u>	3. 제22조제7항을 위반하여 약
	정서에 기재된 납품대금의
	조정방법에 따른 납품대금을
	지급하지 아니한 자
④ · ⑤ (생 략)	④ · ⑤ (현행과 같음)